



## 프리랜서 업무는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조례(FWPO: FREELANCE WORKER PROTECTIONS ORDINANCE)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적절한 시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 적용 대상

프리랜서 근로자란 고용주를 통해 고용되어 보상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1인 이하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정기적으로 사업 또는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주체이되, 운송 또는 배달 서비스를 위해 앱 기반 운전사를 고용하는 주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 업무

적용 대상 업무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을 통해 고용주에게 고용된 프리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해당 업무는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개별 업무 또는 연간 누적 업무의 가치가 \$6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호

고용주 단체는 600달러 이상의 모든 계약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프리랜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해당 연도 중 계약서 자체 또는 이전 구두 또는 서면 계약서의 금액과 합산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서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또는 계약서에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업무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신고 방법

프리랜서 근로자는 임금기준국(OWS)에 불만을 접수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강제 집행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WS에 불만을 접수하려면 위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기준국(Office of Wage Standards)으로 문의하십시오.



1-844-WAGESLA (924-3752)



WAGESLA@LACITY.ORG



WAGESLA.LACITY.GOV

로스앤젤레스시는 미국 장애인법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 기관으로서 장애를 사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요청 시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편의 조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